

● 제276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17. 8. 3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1983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안일 : 2017. 8. 14.
- 다. 회부일 : 2017. 8.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에 따른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제3조의2 본문 중 기금의 존속기한 “2017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개정함.(안제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규제 없음.

-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협의완료.
-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제외법령
-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국·국 협의 사항: 해당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정창훈)

1 개정안의 취지

- 개정안은 노인, 장애인 등 특정계층과 저소득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의 법적 근거인 본 조례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한시적 기간을 5년 연장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보존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2022년 12월 31일 ----- ----- ----- ----- -----.

- 사회복지기금은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자활계정, 주거지원계정으로 구분되어 집행되고 있음.(구체적인 집행현황은 참고자료-① 참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 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생략)

2 계정별 운영 현황 및 존속 필요성

- 사회복지기금내 노인복지계정의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노인계정 운영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영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5,000	337	832	△495	14,503	364	852	△488	

※ 예치금 및 예치금 회수 제외

-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수준이며, 노인빈곤율은 47.7%로 OECD 평균 12.1%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노인에 대한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 어르신 계층을 특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원하는 다른 기금 사업 및 일반 회계 사업은 제한적인 바, 노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본 기금의 유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임.
- 사회복지기금내 장애인계정의 기금 운용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표> 장애인계정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영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310	3,287	1,636	1,651	24,961	2,077	3,715	-1,638	

-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무이자)과 공모를 통한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음.
- 본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용자금 회수 등으로 조성된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용자성 사업인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 사업은 회수된 용자금이 다시 지원됨에 따라 기금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자성 사업인 장애인단체 공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정 수준의 일반회계전입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본 기금의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회계나 기금 등에 중복사업이 없고,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금 유지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사회복지기금내 자활계정 기금운용 현황은 다음과 같음.

(단위 : 백만원)

‘15년말 조성액	‘16년도 운용현황			‘16년말 조성액	‘17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1,000	605	535	70	11,070	5,461	6,310	△849	

※ 예치금 회수 및 예치금 제외

- 본 기금의 자체수입 비중은 주요 지출대비 35.9%로 낮은 편에 해당하나, 사업비의 절반을 차지하는 용자성 사업비는 순환하여 다시 상환되는 것을 감안하면, 사업의 안정성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기금운용 규모와 지출일정, 시중금리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기금사업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여, 비융자성 사업비를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자활사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본 기금의 설치목적이 여전히 유효하며, 다른 회계나 기금 대비 중복사업이 없고 지속적인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기금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개정안에 대한 평가

- 2015년 4월 국회에서 개정되어 7월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같은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불요불급한 기금 설치를 억제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 이와 함께 종전에 같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같은 법에서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일몰제(5년)을 강화하였음.¹⁾

- 같은 법의 개정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기금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미흡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기금이 남설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바,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지방의회가 주기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기금 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검토한건데, 각종 기금운용이 방만하게 운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 배경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금을 재원으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지방의회가 견제하기 어려운 기금 자체의 특성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하겠음.
- 금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의 지속 필요성 등이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노인계정, 장애인계정, 자활계정 사업 중 일반회계 사업과 중복될 수 있는 사업을 평가하여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등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무엇보다 기금 운용에 대한 철저한 사후평가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며, 시장 이자율의 저하로 인해 이자수입 확대가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기금 설치 예산운용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 단점을 고려하여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사업으로써 집행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1)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은 2015년 12월 삭제되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참고자료 ①

사회복지지급 집행현황

(2017. 8. 16. 기준/ 단위: 천원)

사업정보	사업정보	사업정보	예산현액	지출	집행률
회계구분	부서명	세부사업명	계	지출액(C)	집행률
사회복지기금 (복지본부)	합계		10,838,347	6,096,469	56.2%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소계		813,595	551,655	67.8%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19,000	119,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건강증진사업	119,000	119,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자원봉사	116,095	85,755	73.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자원봉사	116,095	85,755	73.9%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정보화 교육	20,000	15,000	75.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정보화 교육	20,000	15,000	75.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경로효친 행사지원	27,000	27,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경로효친 행사지원	27,000	27,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000	30,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관련 학술대회 지원	30,000	30,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77,000	10,000	13.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문화행사 지원	77,000	10,000	13.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지도자육성	71,500	71,5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지도자육성	71,500	71,5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70,000	25,000	35.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시설종사자 역량강화	70,000	25,000	35.7%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주거지원	100,000	9,250	9.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주거지원	100,000	9,250	9.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80,000	158,850	88.3%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0,000	1,350	13.5%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50,000	37,500	75.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어르신 복지증진 공모사업	120,000	120,000	10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금관리비	3,000	300	10.0%
사회복지기금 노인복지 계정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기금관리비	3,000	300	10.0%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소계		3,715,000	1,904,065	51.3%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 책과	기금관리비	15,000	1,285	8.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 책과	기금관리비	15,000	1,285	8.6%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 책과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700,000	479,678	68.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 책과	장애인단체 공모사업 지원	700,000	479,678	68.5%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 책과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3,000,000	1,423,102	47.4%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계정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 책과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3,000,000	1,423,102	47.4%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소계		6,309,752	3,640,749	57.7%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80,000	71,419	89.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종합경영지원 사업	80,000	71,419	89.3%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교육훈련	64,000	56,462	88.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교육훈련	64,000	56,462	88.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200,752	126,435	63.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200,752	126,435	63.0%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유통활성화	60,000	44,432	74.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유통활성화	60,000	44,432	74.1%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5,800,000	3,315,670	57.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5,800,000	3,315,670	57.2%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70,000	25,830	36.9%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70,000	25,830	36.9%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기금관리비	35,000	500	1.4%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기금관리비	35,000	500	1.4%
사회복지기금 (주택건축국)	합계		27,353,023	12,677,779	46.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소계		27,353,023	12,677,779	46.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여유자금 예치	2,161,578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여유자금 예치	2,161,578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000	3,727,619	51.8%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7,200,000	3,727,619	51.8%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770,745	595,460	77.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770,745	595,460	77.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50,700	30,700	60.6%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춧돌통장 자립가산이자 지원	50,700	30,700	60.6%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70,000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70,000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000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주거복지 상담서비스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100,000		0.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17,000,000	8,324,000	49.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2,500,000	1,400,000	56.0%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14,500,000	6,924,000	47.8%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건강증진 사업 : 169백만원, 4,500명 ○ 어르신 자원봉사 사업 : 119백만원, 1,104명 ○ 어르신 정보화 교육 사업 : 20백만원, 720명 ○ 경로효친행사지원 사업 : 45백만원, 193명 ○ 어르신관련학술대회 사업 : 40백만원, 학회개최지원 ○ 어르신 문화행사지원 사업 : 77백만원, 3,700명 ○ 어르신지도자육성 사업 : 72백만원, 6,444명 ○ 시설중사지역량강화 사업 : 70백만원, 660명 ○ 어르신 주거지원 사업 : 77백만원, 48개소 ○ 어르신복지증진공모 사업 : 210백만원, 25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건강증진 사업 : 169백만원, 4,500명 ○ 어르신 자원봉사 사업 : 119백만원, 1,104명 ○ 어르신 정보화 교육 사업 : 20백만원, 720명 ○ 경로효친행사지원 사업 : 45백만원, 193명 ○ 어르신관련학술대회 사업 : 40백만원, 학회개최지원 ○ 어르신 문화행사지원 사업 : 77백만원, 3700명 ○ 어르신지도자육성 사업 : 72백만원, 6,444명 ○ 시설중사지역량강화 사업 : 70백만원, 660명 ○ 어르신 주거지원 사업 : 50백만원, 48개소 ○ 어르신복지증진공모 사업 : 209백만원, 25개 사업 	96.8%
'16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건강증진 사업 : 119백만원, 4,500명 ○ 어르신 자원봉사 사업 : 119백만원, 612명 ○ 어르신 정보화 교육 사업 : 20백만원, 720명 ○ 경로효친행사지원 사업 : 45백만원, 80명 ○ 어르신관련학술대회 사업 : 30백만원, 학회개최지원 ○ 어르신 문화행사지원 사업 : 77백만원, 3,800명 ○ 어르신지도자육성 사업 : 72백만원, 6,444명 ○ 시설중사지역량강화 사업 : 70백만원, 356명 ○ 어르신 주거지원 사업 : 100백만원, 47개소 ○ 어르신복지증진공모 사업 : 200백만원, 23개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르신건강증진 사업 : 119백만원, 4,500명 ○ 어르신 자원봉사 사업 : 119백만원, 612명 ○ 어르신 정보화 교육 사업 : 20백만원, 720명 ○ 경로효친행사지원 사업 : 45백만원, 80명 ○ 어르신관련학술대회 사업 : 30백만원, 학회개최지원 ○ 어르신 문화행사지원 사업 : 77백만원, 3,800명 ○ 어르신지도자육성 사업 : 72백만원, 6,444명 ○ 시설중사지역량강화 사업 : 70백만원, 356명 ○ 어르신 주거지원 사업 : 91백만원, 47개소 ○ 어르신복지증진공모 사업 : 189백만원, 23개 단체 	97.6%

참고자료 ③

사회복지기금 장애인계정 사업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2,000	1,910	95.5
	○ 장애인 단체 공모사업 지원	609	583	95.7
	○ 장애인복지공동체 사업 지원	26	21	80.5
	○ 행정운영경비	20	13	65.0
'16년	○ 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	2,000	952	47.6
	○ 장애인 단체 공모사업 지원	700	675	96.4
	○ 행정운영경비	25	9	36.0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5년	자활사업경쟁력 강화지원 (5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컨설팅 13개소 22백만원 ○ 2015년 제2차 주거복지 적정기술 학교 공동기획 및 교육예산 지원 ○ 조합원 공용 시설장비 구입 예산지원 (700만원) ○ 대상별, 주제별 역량강화교육 19과정 1,938명 ○ 제품 업그레이드 및 신상품 개발 지원 ○ 서울형교육특화과정 6개과정 924명 	100
	자활사업운영지원 (7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쏘카 연간계약 (서울 1,193대, 인천175대 차량관리) ○ 정부양곡배송사업 안정적 운영지원 ○ 서울 희망나르미 협동조합 구성 추진 ○ 천기저귀 배송사업 계약지원 	100
	광역자활사업육성 및 운영지원 (7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 교육 및 설립 지원 ○ 서울청소광역자활기업 설립 지원 ○ 서울시 공공자전거 사업계약 추진 ○ 네트워크 CS 교육 10명, 위시마스터 공동브랜드 개발 ○ 광역자활기업 2개소 설립(청소, 세차) ○ 광역자활근로사업단 5개소 	100
	자활상품판로개척지원 (65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희문장터 등 지원 18회 매출 84백만원 ○ 서울광장스케이트장 카페 매장 공동운영 ○ 전국자활한미당 서울부스 카페공동운영 ○ 자활형 소셜프랜차이즈 카페 사업개발을 위한 컨설팅 진행 	100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6년	광역자활사업육성 및 운영지원 (25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랑보듬이 특수교육실무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7.21. 복지부 인가) ○ 서울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 매출 970백만원 ○ 워시마스터(세차)협동조합 : 824백만원 ○ 서울광역자활 청소협동조합 : 매출 322백만원 ○ 물류배송(11개센터) : 생수, 도시락 배송 등) ○ 자전거(3개센터) : 도봉산역 환승센터 무상임대 	22.5 (이주비 2억원 불용)
	종합경영지원사업 (8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경영지원사업 & 업종별 업그레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2건 75개소 지원 (자활기업 31개소 / 사업단 44개소) - 경영컨설팅 14건 22개소, 디자인개선 4건 3개소, 설장비지원 8건 8개소, 업종별 업그레이드 3건 18개소, 광역기업 3건 24개소 ○ 자활상품개발 : 봉제생활소품 6종 개발 및 생협, 이대 입점판매중 	100
	자활상품관로개척지원 (6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시장 : 3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화문 희망나눔장터 15회(매출 58백만원) -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56회(매출 167백만원) - 공공구매 통합관리시스템 395건(매출 797백만원) ○ 사회적경제 : 7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경제 기념주간(2백7십만원) - 협동조합협의회 생협입점 6개소(1백9십만원) ○ 유통매장 입점 : 5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원 녹색장터되살림매장, kt희망나눔카페 등 	100
	교육훈련 (62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교육 : 8회, 554명 ○ 종사자교육 : 8회, 427명 ○ 통합과정(참여자 및 종사자) : 4회, 594명 ○ 서울형 특화 교육과정 : 8회, 427명 ○ 자활사업 관련자 합동워크숍(1박2일, 118명)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자격증취득지원사업 : 63명 취득 ○ 지정기탁사업 종결 최종평가 및 결과보고서 발간 	100
	조사·홍보 및 조사연구 (40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서울시 자활사업 현황보고서 발간 ○ 서울시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조사 ○ 지역투자형 자활근로사업 개발 및 추진계획안 마련 ○ 홈페이지 개편 및 쇼핑몰 운영준비 ○ 서울시 자활사업 관련자 합동워크숍 개최 ○ “서울 자활상품집” 발간, 배포단체 확대 ○ 서울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개정 토론회 ○ 서울시 일자리 창출 자활기금 활성화 토론회 자료집 	100